

2018년 개정세법 - 관세 관련 주요 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30일 이내),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세관 관서에 납세자의 장부 등 임의 보관 금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2개월→3개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관세조사 사전통지(10일 전→15일 전) 및 결과통지 기한(20일 이내) 조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2억원 이상)]

2017. 12. 19. 공포된 관세법(2018. 1. 1. 시행) 및 2018. 2. 13. 공포된 관세법시행령(2018. 2. 13. 시행) 등의 개정내용 중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으려는 자(수출업체)가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소요량 계산의 적정성을 심사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사후 관세 추정 등에 따른 수출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과세관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신설, 2017. 12. 19, 시행 2018. 7. 1).

개정 전	개정
〈신 설〉	□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 관세를 환급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소요량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심사 신청 ○ 해당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조공정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50일) 내 심사결과 통지

	○ 통지 받은 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 계산 및 환급 ○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간 유효 (다만, 사실관계·상황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효력 상실)
--	--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등

종전에는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그 사유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확대·완화됨으로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부가가치세법 제35조) 되었으며, 향후 관세 조사(심사)로 인하여 추정되는 건들에 대하여는 경미한 과실 해당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회사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u>단순</u>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절차 〈신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좌동) ○ (좌동) - 수입자의 <u>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u> 확인되는 경우 - (좌동)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절차 신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중, '내부가격 결정자료'의 범위가 더욱 명확히 규정되고, 과세자료 제출대상 범위가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관계자 과세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합리화를 제고하였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개정).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은 관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서는 제출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전	개정
☐ 내부가격 결정자료 ☐ '내부가격 결정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신설〉	☐ 내부가격 결정자료 범위의 명확화 ☐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을 포함한 내부가격 결정자료'로 구체화 함. ☐ 과세자료 제출대상 범위 확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이의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 하였으나,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과세가격에 대한 조기 확정으로 납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개정).

개정 전	개정
☐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 기간에 대한 규정 불명확	☐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 ☐ 동종·동류비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u>30일</u> 이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5.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신규 체결된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인증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됨으로써, 해당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수출업체는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전	개정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신규 협정 추가 인증시 세관 제출서류 ○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신규 협정 추가 인증시 세관 제출서류 간소화 ○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의 <u>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로 확인</u>

6. 세관 관서에 납세자의 장부 등 임의 보관 금지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세관 관서에 임의로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관세조사의 투명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관세법 제114조의2 신설).

개정 전	개정
〈신설〉	□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 보관 금지 ○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 보관하는 행위 금지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 가능 - 납세자의 일시 보관 동의서를 수령 -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증 교부 -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되,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 하에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사본 보관 가능

7.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이 기존의 '세액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2개월'에서 '세액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3개월'로 개정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4 개정).

개정 전	개정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 세액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 세액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3개월

8.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종전에는 세관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방법으로 관세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관세공무원의 비리 방지 및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납세자가 관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방법으로 관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4호 및 제111조 제2항 제4호 신설).

개정 전	개정
□ 관세조사 대상 ○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 관세조사 대상 확대 (좌동)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재조사 대상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가〉	□ 재조사 대상 확대 (좌동)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

9.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종전에는 세관이 관세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세조사 시작 15일 전에 관세조사를 사전통지 하도록 해당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관세법 제114조 제1항).

그리고 종전에는 세관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 해당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해당 통지 기한이 다소 불명확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그 기한이 명시 규정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관세법 제115조).

개정 전	개정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조사시작 <u>10일 전</u> □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 조사 종료 시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 조사시작 <u>15일 전</u> □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명확화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10.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고액채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관세 및 내국세 채납액의 징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종전의 “채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에서 “채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 개정).

개정 전	개정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기준 ○ 채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u>3억원</u> 이상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 채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u>2억원</u> 이상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공인회계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TEL. 02 316 4355

E-Mail. chwankim@shinkim.com

최윤옥 관세전문위원

TEL. 02 316 1763

E-Mail. yochoi@shinkim.com

임준희 관세전문위원

TEL. 02 316 4487

E-Mail. jhlim@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